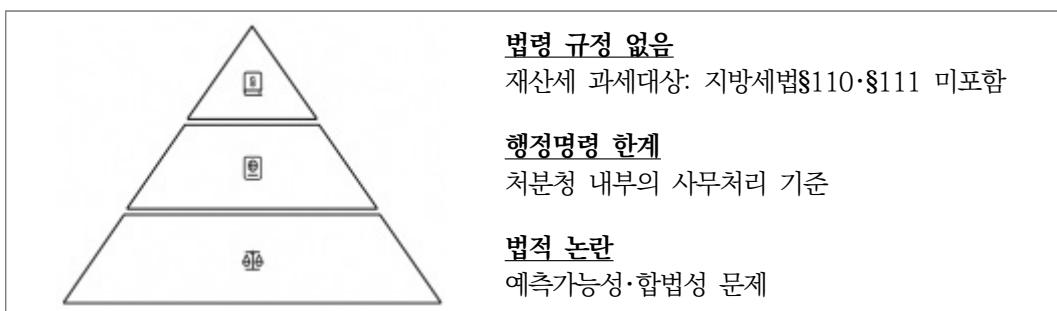


위와 같이 가산율 상세 규정은 미미하게 개정되어 사실상 2009년 이후 16년 동안 가산율 제도가 멈춰있는 셈이다. 그동안 재산 가치가 그만큼 증가했으니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입장과 건물 운영 및 친환경 효율에 도움이 되어 가산율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납세자 측의 입장이 서로 상충해왔고, 앞서 말한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간극이 상당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정보에 의존하여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과세 누락된 IBS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실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. 또한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IBS가 최초로 도입된 90년대에 지어진 노후화된 자동제어시스템 건물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빌딩을 자동제어하는 현대적 스마트건물이 서로 같은 가산율을 적용받는다는 것 자체가 과세형평성을 매우 떨어뜨리고 있다. 최근 건물들은 IBS가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수시설로 보기 어렵고, 90년대 규정의 기준으로는 모두가 가산율을 적용받아야하는 IBS 건축물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. 더군다나 전 세계가 '친환경'·'AI 인공지능'이라는 슬로건하에 움직이고 있는 현 시국에 해당 규정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바 규제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.

III. 법령 개정방향



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 IBS 과세제도는 끝을 모르고 기술이 발전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심지어 세부 규정마저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. 따라서 현행 과세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, 아래와 같은 2가지 방향으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.